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51,068,584	13,532,058
일반회계	428,396,687	12,851,901
특별회계	22,671,897	680,157
기타특별회계	22,671,897	680,157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19,045	27,571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2,578	1,577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8,808,744	264,26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421,991	72,660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1,500,658	45,020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90,319	2,710
상수도특별회계	5,564,447	166,933
수질개선특별회계	182,675	5,48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131,440	93,94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127,216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1,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